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75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	---

1. 건강보험료등의 체납 실태확인 및 확인원 채용 근거 마련 ..	2
--------------------------------------	---

I. 개요

1. 전진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75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진속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11.

(3) 회 부 일 : 2026. 2.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함에 있어 체납 발생원인(고의적 체납, 사실상 휴·폐업상태인 법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등)을 파악 및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필요가 있으나,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체납유형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공단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폐업 또는 사실상 휴·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해서 합리적 체납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유형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1조의7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건강보험료등의 체납 실태확인 및 확인원 채용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험료등¹⁾을 체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체납 원인, 체납자의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등 실태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확인을 위한 확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가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임(안 81조의7 신설, 제119조제3항 및 제6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1조의7(실태확인) ① 공단은 제81조 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한 체납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1)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⑤ 공단은 제3항 후단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81조²⁾는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³⁾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누적 체납액이 2조원 이상임.

<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

(단위: 천세대(개소), 억원)

년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체납액
	세대	체납액	개소	체납액	
2021	993	17,026	49	7,125	24,151
2022	928	15,401	44	5,845	21,246
2023	936	15,087	43	5,573	20,660
2024	941	15,266	45	5,749	21,015
2025	925	15,416	43	5,742	21,15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편, 2025년 12월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에 대한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률 제21213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참고.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절차

제10조의2가 2026년 1월 시행되었음.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실태확인)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절차·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23.]
--

□ 건강보험료 체납과 관련하여 체납자 개개인의 특성·유형에 맞는 체납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는 통계 생산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⁴⁾이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위의 「국세징수법」과 같은 체납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실태확인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는 상황⁵⁾임.

4) 김선,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 복지동향, 2017.2.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체납과 관련된 통계를 주기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중략)

첫째, 체납 문제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 체납 관련 통계를 매년 생산하여 공개함으로써 체납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고,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5)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3항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험료등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단은 「국세징수법」 제35조 등을 근거로 체납자의 현황 파악을 위해 전화, 출장 등의 조사를 기 실시하고 있되, 체납과 관련한 업무가 체납처분의 압류 및 민원응대 등 행정업무에 집중됨에 따라 방문을 통한 조사의 경우 현장인력 부족 등으로 고액 등의 체납자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조사(휴·폐업 확인 등)를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임.

「국세징수법」 제35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창고·사무실·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의 주거등을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1.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3자의 주거등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에 개정안은 공단이 보험료 체납에 관하여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와 이를 위한 확인원 채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유형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특히, 현행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6)에 따라 보험료를 1개월 이

2.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수색조서에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적는 것으로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6조(질문·검사) ①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두(口頭)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 체납자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구두로 질문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기록한 서류에 답변한 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한 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 그 사실을 본문의 서류에 적는 것으로 답변한 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6)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2.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 ④ 공단은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①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 ②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6회를 말한다.
- ③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고, 재산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이 336만원 미만이고, 그 세대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하 “과세표준”이라 한

상 체납하고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6회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그 체납관리가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2025년 12월 법률 제21213호로 개정·공포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국세 체납과 관련한 ‘실태확인제도’가 새로 마련되었는데,

2026년 8월 현재 「국세징수법」에 따른 실태확인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그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실태확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⁷⁾

□ 둘째, 안 제81조의7제2항에 따라 실태확인을 위한 확인원 채용 시 신규 채용과 조직·인사 운영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므로, 실태확인을 통하여 체납된 보험료등의 징수율을 높이는 것과 실태확인제도의 운영에 드는 각종 비용의 지출이 건

다)이 450만원 미만일 것. 다만, 가입자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각각 공단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을 것

7) 참고로, 국세체납액은 2024년 기준 약 110.7조원에 이르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2025년 기준 2.1조원으로, 체납액 규모에 차이가 있고, 체납인원의 규모는 국세의 경우 2024년 기준 133만명, 건강보험료의 경우 2025년 기준 지역가입자 약 93만 세대, 직장 4만 개소에 이룸.

국세청 보도자료, 모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본격 추진, 2025.9.4.

“○ 그간 국세청은 체납액 축소를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경기부진, 조직·인력 제약 등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체납액] ('21) 99.9조원 → ('22) 102.5조원 → ('23) 106.1조원 → ('24) 110.7조원
[체납자 수] ('21) 127.6만명 → ('22) 132.6만명 → ('23) 133.7만명 → ('24) 133.0만명

강보험의 장·단기 재정 안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공단은 실태확인에 필요한 채용 규모 및 재정 소요는 유관기관과 면밀한 검토 후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는 파악이 곤란하다는 설명이나,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신설에 따라 국세징수 분야에 도입된 실태확인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설치된 ‘국세채납관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2026년 예산이 총 100억 5,400만원 편성되었고,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총 500명을 채용하였음.⁸⁾

8) 국세청 보도자료, 사명감을 가지고 「국세 채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2026.1.12.
“□ 이번 채용 공고는 「국세 채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과 방문실태확인원 375명으로 총 50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 방문·전화실태확인원 현황 >

(단위: 명)

구 분	합계	전 화 실 태 확 인 원	방 문 실 태 확 인 원
직 무	-	○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전화상담 및 실태확인 업무보조	○ 체납자 실태확인 -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 등 방문상담
인 원	500	125	375
서울지방국세청	92	23	69
충북지방국세청	100	25	75
원주세무서	16	4	12
부산지방국세청	80	20	60
인천지방국세청	84	21	63
대전지방국세청	48	12	36
광주지방국세청	40	10	30
대구지방국세청	40	10	30

자료: 국세청

□ 셋째, 안 제81조의7제3항 및 제119조제3항은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로 하여금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 제102조 및 제115조⁹⁾에서 공단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

9)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정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115조(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기 규정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임.¹⁰⁾

즉, 공단에 채용되는 ‘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안 제11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과 동시에 현행법 제115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벌칙의 대상이 되는 중복의 문제가 제기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제재의 종류와 수준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115조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되, 만약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 안 제81조의7제3항의 내용은 「국세징수법」에도 규정된 조항이기는 하나, 국세와 관련해서는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형법」, 「국세기본법」 등에 규정된 금지의무 및 제재규정이 적용되는 반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는 실태확인원에 대해서는 금지의무 및 제재규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임.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실태확인)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 9. (생략)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확인원’은 안 제8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체납자에 대하여 거소·수입·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나 질문을 할 수 있어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가 체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할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의 종류와 수위 등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이미 실태확인제도가 도입된 「국세징수법」에서는 실태확인원이 자료를 누설하는 경우 등에는 개정안과 같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3 및 제115조제3항¹¹⁾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누구든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법정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¹²⁾과 맞추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11)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5조(벌칙) ③ 제9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⑥ 등록부등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부등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록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6항을 위반한 사람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 「국민연금법」 13)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넷째,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의 원칙과 그 절차·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81조의7을 신설하면서 도입하려는 ‘실태확인’이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¹⁴⁾에 해당하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행위로서의 실태확인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로 야기할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증표 제시’나 ‘조사의 사전통지’ 등 「행정조사기본법」에 규정된 사항¹⁵⁾을 바탕으로 실태조사에 따른 국민의 권익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3) 「국민연금법」 제124조(비밀 유지) 공단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2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14)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15)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 다섯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공단이 일괄 징수하는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체계’가 2011년 도입되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¹⁶⁾, 「국민연금법」¹⁷⁾ 등 다른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서 보험료 등의 징수·채납관리 등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여 통합하여 징수·채납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회보험의 채납 관련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채용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동 개정안과 유사하게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채납에 대한 실태확인을 하도록 하고 필요 시

1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채납관리

17)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채납처분)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연체금, 채납처분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내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금액이 채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채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채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채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⑦ 건강보험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실태확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752호,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통해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가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최근 「국세징수법」 개정('25.12.23.)에 근거한 국세청의 '실태확인원'과 유사하게 건강보험공단 역시 실태확인원 채용이 이뤄진다면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징수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재 공단은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 중이므로, 타 사회보험 근거법률도 유사한 내용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체납유형을 반영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실태조사 및 실태확인원 채용 근거 마련된다면 정확한 실태확인을 통해 고의적 체납, 사실상 휴·폐업상태, 경제상황 악화 등 체납자의 유형에 따른 효율적 징수추진을 강화할 수 있고, 체납유형별(고의적 체납자, 휴·폐업 법인 사업장 등) 체납 관리로 징수 효율성 증대 및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 또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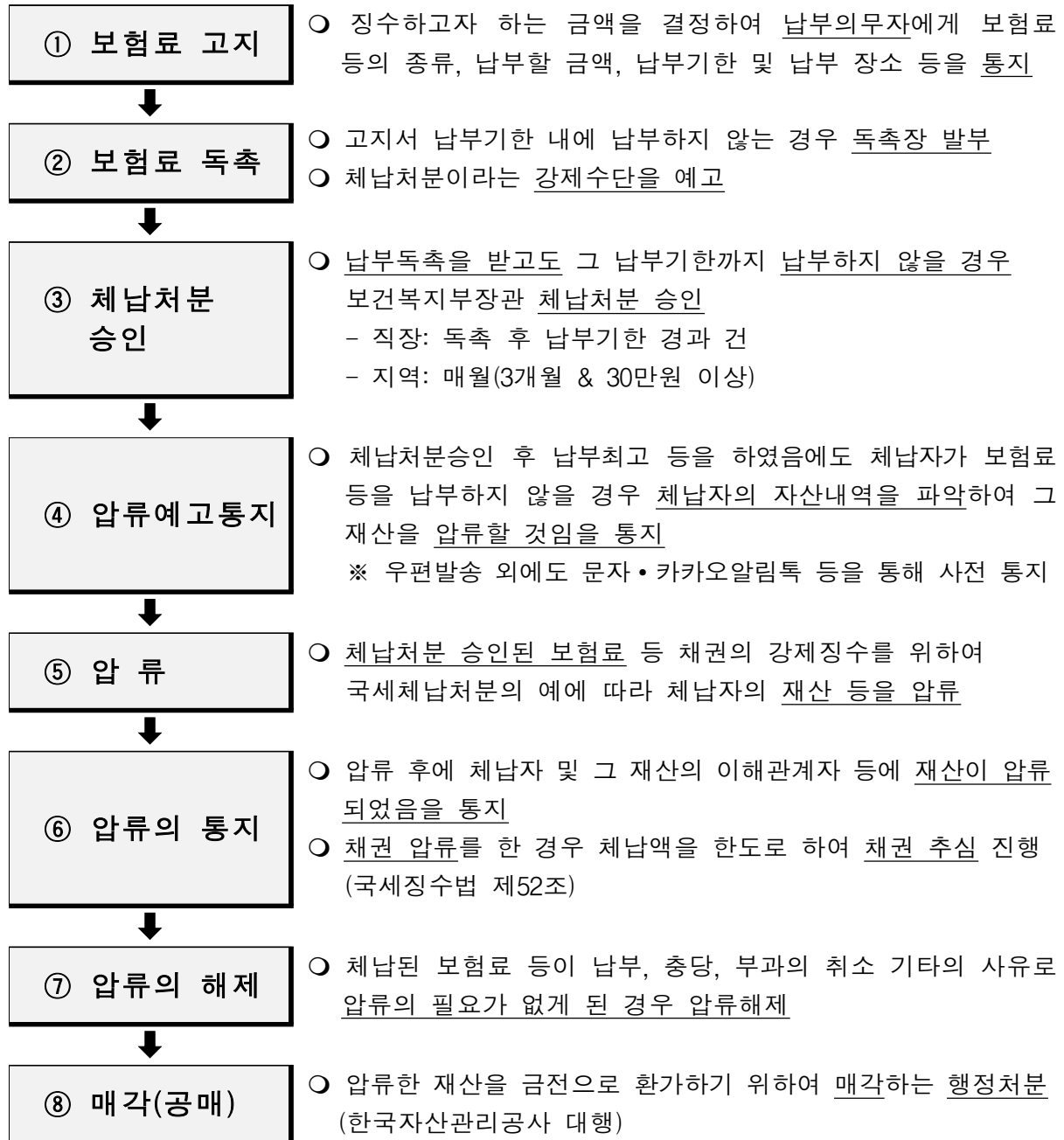
□ 대한의사협회

- 건강보험 보험료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와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체납 유형별 차등 대응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함. 다만, 이를 위하여 별도의 실태확인원 인력을 충원하도록 한 부분은 신규 인력 채용 및 운영에 따른 상당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며, 이는 보험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 아울러, 실태확인 업무는 기존 공단 인력을 활용하여도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별도 조직 확대 없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03

참고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절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